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개정(제18347호, ‘21.7.27일 공포, ’22.1.28일 시행)에 따라,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으로 확대하고,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.

또한, 정부보장사업 중 차량 낙하물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를 배제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및 분담금의 관리·운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아울러,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(안 제12조의3 신설)

-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

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확대

나.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
(안 제20조 개정)

-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, 보상청구시 해당 내용 기재 의무 배제

다.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(안 제22조의2 개정)

-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,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생활형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

라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분담금 수납·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·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(안 제31조, 제33조의10, 제33조의11, 제35조의3 개정)

마.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(안 별표4)

-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(월 20만원→30만원),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(월 15만원→30만원), 유자녀 자립지원금(월 6만원→10만원), 피부양가족 보조금(월20만원→30만원)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로 하고,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)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제2의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“법 제30조제1항제1호”를 각각 “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2조의2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4.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)의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등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
5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지원대상자 여부 등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)의 생활형편에 관한 사항

6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피해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에 관한 사항

제31조제1항 중 “보험회사등”을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(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)”으로, “법 제30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33조의8 전단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”를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험 관련 단체는”을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11제2항 전단 중 “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”을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원”으로, “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”을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직원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공”을 “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”으로, “각 호와”를 “각 호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

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험회사, 보험종목
2. 보험가입자의 이름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, 자동차등록번호
3. 책임보험의 시작일·종료일
4.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 제1호제1호가목의 기준금액(만원)란 중 “20”을 “30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제2호가목의 기준금액(만원)란 중 “15”를 “30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제2호다목의 기준금액(만원)란 “월 6”을 “월 10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의 기준금액(만원)란 중 “2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 는 제외한다)의 성명 및 주소 4. (생 략) 5.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 번호(<u>법 제30조제1항제1호에</u>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6. (생 략) ② ~ ⑨ (생 략) 제22조의2(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) <u>법</u> <u>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</u>에 서 “대통령령에 따른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1항제1호 및 제3호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<u>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</u> <u>제3호</u>-----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제22조의2(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) <u>법</u> <u>제30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. 1. <u>(현행과 같음)</u> 2. <u>(현행과 같음)</u> 3. <u>(현행과 같음)</u> 4. <u>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</u> <u>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</u> <u>한다)의 가족구성원 인적사항</u> <u>등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</u> <u>민등록전산정보자료</u> 5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및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</u> <u>가족 지원대상자 여부 등 피</u> <u>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</u>
---	---

<신 설>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1조(분담금액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(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제32조제1항,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조에서 같다)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(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. 이하 “책임보험료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)의 생활형편에 관한 사항

6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피해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에 관한 사항

7. ----- 제6호-----

제31조(분담금액) ① -----

----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-----

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제33조(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위한 협조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·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(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·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위한 협조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)-----

-----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8(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이하 “보장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 단체(이하 “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”라 한다)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10(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

제33조의8(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) -----

--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
진흥원-----

-----.
-----.

제33조의10(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-----

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11(기금의 회계기관) ①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

---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----

-----.

제33조의11(기금의 회계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원

----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직원 -----

-----.

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
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
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.

제35조의3(정보의 제공 내용 및
범위)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
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
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
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
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
와 같다.

1.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

제공: 보험회사, 보험종목, 보
험가입자의 이름, 자동차등록
번호, 책임보험의 시작일·종
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
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
정보(다만, 보장사업자가 법
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
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
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
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
주소·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
다)

2.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

제공: 보험회사, 보험종목, 보
험가입자의 이름, 주소 및 주

-----.

제35조의3(정보의 제공 내용 및
범위) -----

----- 그 업무를 수행하기
위해 제공-----.

1. 보험회사, 보험종목

2. 보험가입자의 이름, 주소 및
주민등록번호, 자동차등록번
호

<u>민등록번호, 자동차등록번호,</u> <u>책임보험의 시작일·종료일</u> <u>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</u> <u>수납·관리와 관련하여 국토</u> <u>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</u> <u>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3. 책임보험의 시작일·종료일</u> <u>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</u> <u>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업무를</u> <u>수행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</u>
---	--

심사관련 제공요청자료(제12조의3 관련)

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
- 나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
- 다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출입국자료
- 라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및 등록사항,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, 휴·폐업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보유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
- 마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자료
- 바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기록
- 사.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에 따른 자격,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, 급여의 제한·정지에 대한 자료
- 아.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,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
 - 1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 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
 - 2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
 - 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 - 4)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
 - 5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조리사
 - 6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 - 7)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
 - 8)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자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12조에 따른 의료기관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·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
- 차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의료기관, 보험회사등, 보험요율산출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

[별 표 4]

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지원대상	지원구분	기준금액(만원)
1. 중증 후유장애인	가. 재활보조금 지급	월 30
	나. 장학금 지급	분기 30
2. 유자녀	가.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	월 30
	나. 장학금 지급	분기 30
	다. 자립지원금 지급	월 10
3. 피부양가족	보조금 지급	월 30

비고: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,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